

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
시행령 전부개정령안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전략계획의 제출 및 점검(안 제3조~4조)

가. 개정 이유

- 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및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사업 전략계획을 해당 연구개발사업 시작연도의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(제3조)
- 사업 전략계획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함(제4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및 점검, 점검결과의 반영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을 강화하고, 전략계획에 기반한 사업평가 추진기반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(안 제5조~제7조)

가. 개정 이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심의 운영을 위해 자체평가실시계획 수립,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의 제출, 자체평가의 점검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자체평가 대상, 평가위원의 구성, 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평가실시계획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자체평가 결과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,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이행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자체평가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수정·보완하도록 하였음(안 제7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운영하되, 평가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조치계획과 조치실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특정평가의 대상 선정 등(안 제8조~제10조)

가. 개정 이유

- 특정평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평가 대상 선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정하도록 함

나. 개정 내용

- 특정평가의 대상 사업을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, 연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(안 제8조)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

날부터 1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사업 추진실적,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 특정평가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함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정조치 이행계획 마련 기간을 단축하여(기존 2월 → 1월) 평가결과 적용의 시의성과 사업 개선의 효과성을 확보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연구기관 계획수립,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등(안 제11조~14조)

가. 개정 이유

-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계획 수립,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음

나. 개정 내용

- 기관운영계획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, 연구사업계획을 기존 연구사업 연도가 종료된 이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)
-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(안 제11조제1항), 계획 수립 시 자체평가 결과와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)

- 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(안 제12조제1항)을 정하고, 연구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(안 제12조제2항), 상위평가의 방법(안 제13조제1항) 및 재평가 요구(안 제13조제2항) 등을 규정함
-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(안 제13조제3항), 시정조치의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성실한 평가 수행을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과제평가 표준지침(안 제17조)

가. 개정 이유

- 과제평가 표준지침 제공의 의의를 명시하였음

나. 개정 내용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17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성과평가 표준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성과평가의 효과적 실시를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계획 마련 대상 등(안 제20조)

가. 개정 이유

-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확대에 따라 대학·출연연의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계획 마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의 기준을 과거 3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(기존 100억원 → 300억원)인 대학으로 상향함(안 제20조제1항제1호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,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계획 마련 대상 기관을 조정함으로써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,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7.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·활용 계획 및 효과성 분석(안 제21조~제22조)

가. 개정 이유

- 연구개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·활용 계획 수립과 효과성 분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성과관리·활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성과관리·활용 계획의 제출 기한, 성과관리·활용 계획에 대한 점검 및 수정·보완 요청 등을 규정함(안 제21조)
- 효과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효과성 분석 결과의 제출 기한, 효과성 분석 결과의 점검 및 수정·보완 요청 등을 규정함(안 제22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8.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(안 제23조~제25조)

가. 개정 이유

-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등록·공개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

함(안 제23조)

-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·공개해야 하는 성과평가정보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(안 제24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정보의 등록·공개를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9. 성과평가·관리 담당관(안 제25조)

가. 개정 이유

- 성과평가·관리 담당관의 요건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성과평가·관리 담당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고, 담당관의 업무 내용을 구체화함(안 제25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평가·관리 담당관을 통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·활용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10.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(안 제27조~제28조)

가. 개정 이유

-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, 전담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를 이관하여 규정함

나. 개정 내용

-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시 전담조직 및 인력, 시설 및 장비, 보안체계를 검토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(안 제27조)
-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운영실적의 점검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,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연구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통해 효과적인 연구성과 관리·활용 기반을 조성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부칙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을 규정함